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10월 15일

나. 의안번호 : 13-82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」 제13조
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“교육지원과”를 “교육청소년과”로 명칭을 변경함.
- (2) 안 제6조 제2항 제20호에서는 주민생활국장의 분장사무에 “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함.

[검토의견]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강화와 각종 학교지원 사업과 학교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도 저촉됨이 없고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